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0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김동아·허성무·임호선

박균택 • 추미애 • 김남근

김영호 • 이정문 • 박정현

김문수 · 허종식 · 한준호

김준혁 • 이병진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,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,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,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

기한을 "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"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,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2항). 법률 제 호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본문 중 "사유가 발생한"을 "사유를 안"으로, "30일"을 "60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30일"을 "60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	제18조(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
정 등) ① (생 략)	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	②
각 호의 <u>사유가 발생한</u> 날부터	<u>사유를 안</u> <u>60</u>
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	<u>일</u>
다만,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	
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	
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	<u>60일</u>
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